

서울특별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회부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479호
- 나. 발 의 자 : 최선 의원 외 28명
- 다. 제안일자 : 2021년 5월 28일
- 라. 회부일자 : 2021년 6월 1일

2. 제안이유

- 서울특별시 공무원의 직무발명 의욕을 고취하고 직무발명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사전컨설팅 및 발명비용 선지급 제도 신설함(안 제5조제2항).
- 나. 등록보상금 지급 금액을 상향조정함(안 제16조).
 - (1) 특허권 100만원 → 200만원
 - (2) 실용신안권 50만원 → 100만원
 - (3) 디자인권 30만원 → 60만원

다. 발명비용 지급 금액 한도를 상향조정함(안 제16조).

(1) 발명비용 500만원 → 700만원

라. 상향된 등록보상금 및 발명비용은 조례시행 이후에 직무발명권리 승계를 위한 신고가 있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함(안 부칙 제2조).

마. 직무발명 홍보 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홍보 사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(안 제33조).

4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강상원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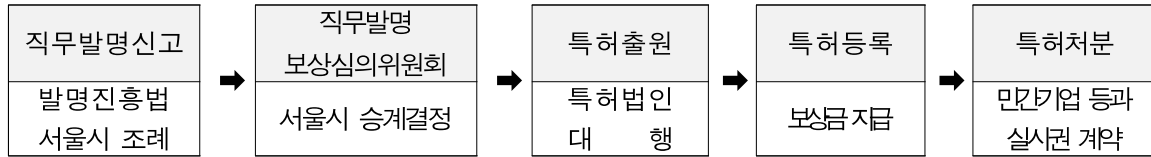
가. 개정안의 개요

- 개정안은 공무원의 직무발명 의욕을 제고하고 직무발명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전컨설팅 지원 및 발명비용 선지급, 등록보상금 및 발명비용 지급 한도 상향 조정, 직무발명 홍보업무의 실시와 전문기관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.

나. 직무발명 제도 운영 현황

- 특허청에 따르면, 우리나라 특허 출원의 80% 이상이 직무와 관련된 발명으로 우수한 기술 개발과 특허 확보를 위해 직무발명 보상 제도의 중요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음.
- 이에 서울시는 소속 직원들의 직무발명을 장려하고 발명의욕을 고취시키는 한편, 시유특허권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를 위해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음.
- 직무발명의 실용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허권을 승계하고 발명자에게 소정의 보상을 하고 있음.

< 직무발명 업무 추진 절차 >



- 지난 5년간 공무원 직무발명 실적을 살펴보면, 신고 188건 중 110건이 승계되었고, 이 중 총 70건이 등록되었음(특허 59개, 실용신안 5건, 디자인 6건).

< 직무발명 신고 및 승계 현황 >

(단위 : 건)

연도	신 고				승 계				비승계	반려 등
	계	특허	실용신안	디자인	계	특허	실용신안	디자인		
계	188	164	14	10	110	97	5	8	57	23
2020	47	45	1	1	36	35	0	1	11	0
2019	31	30	0	1	18	17	0	1	10	4
2018	32	26	6	0	19	16	3	0	9	5
2017	32	27	2	3	16	14	0	2	9	7
2016	46	36	5	5	21	15	2	4	18	7

※ 2021년 제1차 직무발명 보상심의회는 8월 중 개최 예정

다. 등록보상금 지급금액 등의 상향 조정(안 제16조)

- 안 제16조는 직무발명에 대한 의욕을 높이기 위해 등록보상금 지급 금액과 발명비용의 지급 한도를 현재보다 40~100%까지 상향 조정하고 있음.

- 상향 조정된 금액의 적용시점은 조례 시행일 이후 시장에게 직무 발명 신고가 있는 경우부터로 정하고 있음(부칙 제2조).

< 직무발명 지원범위 확대 현황 >

(단위 : 만원)

구 분	현 재	개정안	비 고
등록보상금 (제16조①)	특허 100 실용신안 50 디자인 30	특허 200 실용신안 100 디자인 60	100% 상향
발명비용 (제16조②)	500 이내	700 이내	40% 상향
처분보상금 (제17조)	처분수입의 100분의 50	좌동	

- 최근 3년간 직무발명 보상금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, 특허건수와 등록보상금은 증가하고 있으나, 외부에서 지적재산권을 사용하고 지급하는 처분보상금은 감소하고 있어 부가가치가 높은 사유재산권이 창출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.

< 직무발명 보상금 지급 현황 >

(단위 : 천원)

구분	등록보상금	발명비용	처분보상금	
2018년	특허	12건	3건	22건
	실용신안	3건	2건	1건
	디자인	2건	-	7건
	합계(천원)	14,100	18,261	16,903
2019년	특허	7건	5건	30건
	실용신안	-	1건	1건
	디자인	1건	-	6건
	합계(천원)	7,300	19,434	32,414
2020년	특허	17건	3건	9건
	실용신안	1건	-	3건
	디자인	-	-	2건
	합계(천원)	17,500	10,827	25,409

- 특히, 부산 등 일부 광역 시·도에서 보상금 규모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, 2013년에 정한 등록보상금과 발명비용의 상향 현실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.

< 타 시·도 직무발명 보상기준 현황 >

('20.11월 현재, 단위: 만원)

지방자치단체	등록보상금 (특허/실용신안/디자인)	발명비용	처분보상금 지급 비율(%)
서울특별시	100/50/30	500	50
광주광역시	200/120/80	-	50
대구광역시	150/100/50	-	50
부산광역시	150/100/50	-	50
울산광역시	150/100/50	-	50

라. 사전상담과 발명비용 선지급 도입(안 제5조)

- 안 제5조 제2항은 직무발명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사전상담과 발명비용의 선지급을 각각 규정하고 있음.
- 사전상담은 아이디어는 있으나 발명에 대한 경험이나 전문지식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무원을 지원할 수 있어 직무발명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고 저변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.
- 발명비용의 선지급은 직무발명 초기에 필요한 재료나 설비 등의 구입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경감시켜 줌으로써 직무발명의 의욕을 고취시키고 발명을 장려할 수 있는 입법효과가 있음.

마. 설명회의 개최와 전문기관의 위탁(안 제33조 신설)

- 안 제33조는 직무발명을 장려하고 시유평특허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거나 홍보할 수 있고, 이와 관련된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.
- 지난 5년 간 직무발명의 처분은 감소 추세를 보이면서 실시료 수입 또한 감소하고 있음.

< 최근 5년간 직무발명 처분 및 실시료 현황 >

(2021. 6월 기준, 단위 : 건)

연도	처분 현황				
	계	특허	실용신안	디자인	실시료(천원)
계	138	99	11	28	183,274
2021	17	15	0	2	10,308
2020	14	9	3	2	25,409
2019	37	30	1	6	32,414
2018	30	22	1	7	16,903
2017	44	26	6	12	112,165

※ 실시권 계약 건수를 기준 및 실시료 정산연도 기준

- 전문기관을 통한 직무발명 설명회는 시유평특허에 대한 홍보와 수요 기업의 발굴로 시유 재산권의 활용도를 높이고 직무발명 보상제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.

담당 조사관	연락처
김성만	2133-8055